#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508

발의연월일: 2025. 5. 14.

발 의 자:이훈기·문진석·정을호

박민규 • 박지원 • 유동수

김교흥 • 정일영 • 맹성규

노종면 • 이정문 • 김영배

김용만 · 허종식 · 김우영

조인철 의원(16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신 유행이 반영된 의류를 하나의 업체가 제작·유통하는 방식의 '패스트 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SPA 브랜드가 의류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생산방식, 유행의 민 감성 등으로 다량의 의류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심각한 환경문제로 이 어지고 있음.

이에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의류제품 순환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 법률 제 호

##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① 의류제품을 생산·수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 폐기물 발생 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제17조의2(의류제품의 순환이용 촉진) ① 의류제품을 생산·수 입·판매하는 자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매출 액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품 의 생산·유통·소비·처분의 과정에서 순환이용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 폐기물 발생량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